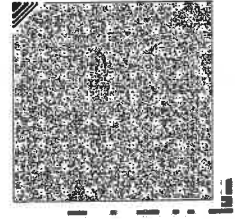
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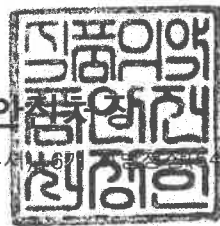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'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' 개정 알림

1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국제표준서식 E2B(R3) 적용 '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' 시범운영('21.6.1~)에 따른 보고 서식 추가 등의 내용으로 「약물 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, 참고로 동 안내서는 "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공무원지침서·민원인안내서"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.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자 본부(54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2개 전부서), 67개 전부서, 유관기관

주무관 하윤정 서기관 신경승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오정원
전결 2021.7.7.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-4187 (2021. 7. 7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706 팩스번호 043-719-2700 / sweetycat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